

입찰 전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별도 요청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오니 가능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 건물, 시설물 형태와 시장 여건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도 현장답사 실시 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매·전대 및 양도·양수할 수 없고, 지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3.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용허가대상 시설의 용도 및 업종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시설사용 중 업종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관련법령 및 공단의 승인 후 업종변경이 가능하며, 미승인 상태에서 지정된 용도 이외의 업종으로 영업을 할 경우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허가 후 업종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종변경에 필요한 경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책임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련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부산광역시 또는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시설 운영을 위해 별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의무사항은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기간에 한하여 사용자의 책임 하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한 영업 준비행위에 따른 손해 및 그 외 일체의 손해를 부산광역시 또는 공단에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6.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부대시설은 공단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부산광역시 또는 공단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사용허가 후 사용자가 공단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인의 책임 하에 허가기간 종료 시까지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사용허가와 관련한 법령, 공단 규정, 사용허가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공단의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 시행 일주일 전까지 도면(전기, 소방, 건축, 위생설비 등 기타 설계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자갈치시장시설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자갈치시장시설팀)에서 지정한 담당자가 시공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 목적물 내 칸막이, 창호, 내장 등의 신설 또는 모양 변경

나.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압의 변경, 전화가설 기타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 사항 등

다. 금고 기타 중량물의 고착

라. 공단이 설치한 시설이외의 비품 등의 설치

마. 방염자재의 사용 등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일체

바. 내부 인테리어(벽체, 출입문 등) 사용허가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부시설

※ 입찰 전 내부시설에 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공단(자갈치시장시설팀)으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신규 사용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인테리어설계서를 요구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사용자의 서비스·상품관리 책임

가. 사용자는 허가 시설 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손해보험(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증서를 제출하거나, 공단이 선가입한 손해보험의 해당 사용허가 시설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공단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공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사용허가 시의 허가조건과 관련법규 및 공단규정(내규 포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사항 불이행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인터넷 등에 게시하며,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수탁권한대행자 부산시설공단 이사장(관인 생략)